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처분기간)	반송 사유
조은건설㈜ (손호성)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557-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의성2010-9-02) 토공사업 (의성09-02-5) 조경식재공사업 (의성2010-16-02)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실효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3호	영업정지5월 (19.5.27~19.10.26)	이사감

3. 공고기간 : 2019. 5. 23. ~ 2019. 6. 9

4.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 읍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 청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650-6331 / fax 054-650-6339)

2019. 5. 22.

예 천 군

